

# 원산지 규정과 미국의 통상정책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and Trade Policy of United States)

김 문 관\* · 이 용 완\*\*  
(Kim, Moon-Kwan) · (Lee, Yong-Wan)

## 목 차

- I 서론
- II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의의와 통상정책적 기능
  - 1.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의의
  - 2.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논의 전개
  - 3. 원산지 규정의 통상정책적 기능
- III NAFTA의 원산지규정을 통한 미국의 통상정책
  - 1. 미국의 통상정책 변천과 NAFTA
  - 2. FTA와 원산지규정
  - 3. NAFTA의 원산지규정과 미국의 보호주의
- IV 결론

## I.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이익의 추구하고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두가지 목표에서 표류하면서 최근의 국제경제 현실은 다자간주의(Multilateralism)와 함께 자국의 경제이익을 겨냥한 경제의 블록화 현상의 확대 및 국제무역의 불균형 심화라는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NAFTA나 EU 등이 주도하는 지역주의는 실질적으로 상호주의를 선호하면서 역외국에 대한 관세의 차별적 적용뿐만 아니라 반덤핑규제 및 원산지규정 등의 강화를 통해 역외국들의 역내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에 체결된 NAFTA는 3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외국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지역별 경제의 블록화 속에서 원산지규정은 자국산업보호 및 지역주의 내에서 역내산업보호를 위한 차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다자간주의의 흐름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생산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제품생산의 전과정이 한 특정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제품의 원산지 판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제품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진행되게 됨에 따라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국가에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판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점차 관심을 더해가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특성과 통상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원산지규정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NAFTA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FTA정책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의의와 통상정책적 기능

### 1.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의의

원산지규정이란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기 위한 제반기준 및 절차 등을 이른다. 상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본 규정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경제의 질서 및 경제활동의 질적인 변화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 유럽연합(EU)의 탄생, APEC의 활성화 등 지역주의의 확산과 역외차별적 성격 강화를 위한 차별적 통상정책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을 활용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경제적 의미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규정한다. 특정제품이 전적으로 한 국가내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에 큰 문제가 없다. 주로 원산지 판정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는 해당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될 때이다.

실제 개별적인 사례에서 원산지 판정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떠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적용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산지 판정기준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비교적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의 근본원리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이다(강인수, 1998. pp.139-140).

오늘날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 변형 발생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즉, 첫째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둘째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셋째 주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은 적용목적에 따라 달리 채택되고 있으나 대체로 혼용되고 있다.

국제관세협력위원회의 원산지부속서는 원산지판정기준, 특히 원산지 변형기준의 3가지 판정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재료와 완성품간의 세번의 변경을 원산지판정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의 조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증거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이 실제로 소정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기에 곤란하지 않다.

그러나 네가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로 한 예외품의 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이들 리스트의 원산지 인정조건은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조건에 항상 최신의 것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 조건 중 가공공정의 기술은 제조자가 선의에 의해 오해될 하는 것이 없도록 복잡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원산지결정을 위해 관세율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 쌍방이 여러 가지 관세율표를 기초로 한 동일 품목표를 채용하고 또 당해 품목표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같이 기준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나, 가공공정의 예시가 너무 길고 또 너무 상세함으로써 기준의 작성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정확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또는 원산지 불명의 구성채권의 가액을 이용 가능한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출된 물품이 공장도 가격 또는 수출가격에 의한 경우 이들 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용이하게 확인되며 또한 관계 무역업자들의 상업송장과 상거래상의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특정비율을 근소하게 상회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의 적용여부의 판정이 곤란하다. 또한 원재료의 세계시장 가격의 변동과 외환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부가가치 산정시 제조비 등의 경비산정이 곤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이들 요소의 구성 및 경비의 해석이 각국별로 상이하다. 이외에도 간접비를 제조비에 포함해야 하는가 또는 유통, 판매비에 포함해야 하는가의 분쟁소지가 다분하다.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규정은 다소간 장단점이 있으나 공통적인 원산지규정이 없으면 수출,입 쌍방에서 관계당국에 업무를 번잡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무역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한편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원산지규정은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으로 분류할 수 있다(Edwin Vermust and Raul Wear, 1990. p.57). 특혜원산지규정이란 NAFTA, EU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무역지대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과 EU 등은 각종 FTA와 근접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적 또는 쌍무적 특혜 무역협정 및 GSP차원에서 개도국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공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각 별도의 원산지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는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혜 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혜무역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원산지 판정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중요시 한다.

반면에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 표시용, 통계용, 기타 비관세 무역조치 등이 있는데 특혜 원산지규정과는 달리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국가로 부터의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당연히 원산지의 식별이 필요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경우에도 원산지의 식별은 물론 제소의 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제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도 본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표 1> 주요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판정기준

특혜무역협정	주요 회원국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
Andean Group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함 · 보조기준으로서 50%의 부가가치 기준 적용
AFTA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40%의 부가가치기준 · 역내누적을 인정함
CER	호주, 뉴질랜드	· 50%의 부가가치 기준 · 마지막 제조공정이 회원국에서 수행
EU의 대의특혜조치	EFTA, ASP 제국, Mashreg 제국, Magreb 제국	·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함 · 사안에 따라 주요 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
EFTA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 주요 공정기준을 중심으로 함 · 보조기준으로서 50%의 부가가치 기준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함 · 보조기준으로서 5%의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사용함
미국의 GSP	주요 개도국	· 35%의 부가가치기준을 중심으로 함 · 부가가치산정에 있어서 소위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적용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함 · 보조기준으로서 50%의 부가가치기준 과 주요 공정기준을 사용함

주) CER은 Closer Economic Relationship, EFTA는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MERCOSUR은 Mercado Comun del Sur의 약칭

## 2.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논의 전개

원산지에 대한 명문화는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되어 일명 파리협정을 부리리우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Property of 1883)” 이 최초로서 동협정 제10조에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수입품은 압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1998).

파리협정은 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당 경쟁의 방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 지적재산권분야 전반에 걸친 최초의 국제조약이며, 이 협정의 기본틀이 이후 체결된 관련 국제조약들의 표준이 되기 시작하여 그후 1890년 미국 관세법의 입법을 비롯하여 유럽국가들의 관세법에도 원산지규정이 자국의 의도대로 입법화되어 원산지규정은 국제무역질서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하였다.

전후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7년 제정된 GATT협정은 제9조에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규정을 두고 각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 제정시 원산지표시 규정이 수출국의 상품과 산업에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원칙적인 선언을 하였으나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실질적인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되었으며, 1973년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CCC 41/42차 이사회에서 제정한 소위 국제관세법인 교토협약은 부속서에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가입국이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김창태, 1998).

국제무역질서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WTO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제관세기구와 협력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해 현재 다자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원산지규정 협정의 적용범위, 원산지 판정기준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주요 협상참가국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중의 하나로서 특혜무역의 포함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원산지 판정기준에 있어서는 원산지 부여의 당연한 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 이외에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공정을 거쳤을 경우 이를 판정하는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간주되었다.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국제무역에 있어서 더욱 증가될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로서는 즉 첫째,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차원의 무역협상 및 논의의 전개는

전통적인 무역의 개념 및 무역관련 조치 범주를 확대시킨다(한홍렬, 1995).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경쟁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최초로 작성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정이 마련되었으며 분쟁해결절차, 반덤핑 등 무역과 관련한 규칙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원산지규정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처럼 무역과 관련한 쟁점이 그 외연을 넓혀 가는 반면에 지역주의는 시장 개방의 정도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럽은 1993년 1월 공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며 외교안보정책과 단일통화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다. NAFTA에서도 단순히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벗어나서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투자활동의 보장 등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적용분야가 상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활동으로 그 대상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국가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국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른바 생산과정의 세계화가 증가함으로써 본 규정의 문제는 최근에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한 상품이 한 국가간에서 완전히 얻어졌을 때 원산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재료들이 상품의 최종 수입국에 수입되기 전에 제조, 가공,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다른 작업을 위해서 다른 국가에 운송되었을 때 최종재화는 물론 각종 부품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원산지인지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의 판정을 위한 규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오늘날 본 규정이 문제가 되어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여러 차례 거듭된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 종래의 명시적인 관세 비관세장벽으로는 소기의 산업 및 무역정책적 효과를 실현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본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결국 원산지규정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쿼타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무역관련조치에 부속되는데 이때 각국이 원산지로 판정받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정하거나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하여 원산지 규정을 이른바 2차적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다

### 3. 원산지 규정의 통상정책적 기능

무역과 관련한 제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규정의 적용은 통상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판정 여부에 따라 무역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자간 섬유협정(MFA)과 같이 수출국에 따라 수입물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적절한 판정이 매우 필요하며, 섬유 및 의류수출에 주력한 국가들인 한국·홍콩·대만 등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는 섬유 쿼타는 원산지의 판정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선·후진국간의 경제 발전의 격차와 비교우위의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MFA 하에서는 대규모의 쿼타량을 배정 받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후발개도국인 중국의 경우는 쿼타량의 제한으로 충분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오늘날 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의 글로벌화에서 이와 같은 쿼타 규제는 생산 및 투자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섬유제조업체가 국내의 고노동·고비용으로 인해 중국에서 임가공사업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이와같은 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쿼타 소진율에 따라 수출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출자유규제도 원산지외 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은 일본 및 대만과 공작기계에 대하여 수출자유규제협정을 체결했는데 미국은 공작기계의 부분품 중 필수부품과 보통부품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3국가에서 수입되는 공작기계라 할지라도 그 부품이 일본이나 대만에서 수입되어 일정한 수준의 점수가 초과될 경우라면 부품의 구성비를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수출자유규제와 같이 일종의 국별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항상 존재한다.

특히 VER의 경우는 항상 수출 물량이 제한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수출국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단순한 우회수출이 아니라 제3국에서 상당한 공정을 거쳐 수출하게 된다. 하지만 수입국으로서는 VER을 실시하였던 애초의 목적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수출국에 불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덤핑제도는 특정제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훨씬 낮아서 국내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덤핑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양 시장에서의 가격을 조사하고 수입시 덤핑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그러나 특정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 제품의 원산지가 과연 수출국인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필요하며 이때 수출국의 시장을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의 판정기준 또한 필요하다. 또한 세이프가드 제도에 의한 수입규제조치의 실시를 위해서도 국내산업의 존재여부와 피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기업의 직접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생산활동이 다국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특정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반드시 그 나라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반덤핑이나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한 기업의 제품이 자국제품이라는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반대로 반덤핑 제소의 결과로 반덤핑 관세를 물게된 수출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국의 부품을 이용하여 제3국에 우회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우회수출제품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서는 여전히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적용 대상의 적용대상인지를 밝히기 위해 범위판정이라는 조사를 벌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실질적 변형기준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과 달라 원산지의 판정을 위한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 또한 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 조립되는 경우에도 사용된 부품,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반덤핑관세의 대상여부를 판정한다. 그 제품이 미국산인지 원래 관세부과를 받던 원산지의 제품과 동일한지를 구별해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이처럼 원산지 규정 문제는 불공정 무역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자의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오늘날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수입규제를 위한 통상정책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통합에 있어서 본 규정은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결성시 원산지규정의 제정의 본래 목적은 무역굴절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

게 적용할 경우 무역장벽 제거의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비관세장벽이 무역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산업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며 그 자체가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NAFTA는 세번 변경기준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NA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록 투명할지라도 일부 비효율적 산업정책을 갖도록 만든다.

역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 캐나다로 재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이용한다. 그와 같은 보호가 장점이 있는지의 여부는 하나의 논쟁사항이지만, 그것을 위해 원산지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보조금 및 공통 또는 조정관세를 통한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욱 큰 무역왜곡과 보다 많은 비효율성을 가져 올 것이다.

산업단계모형에 의하면 이미 정보시대에 도달해 있는 선진국들 산업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신흥공업국들 그리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국가들은 각각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들의 종류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제적 경제통합은 국가간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을 수반하게 된다. EC나 미국의 경우 역내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역외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이들의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되고 있다. 또 경제통합이 성공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통합 수준에 비례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도적 통합의 속도에 비해 실물경제의 통합속도는 느리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의 완료가 실물경제의 통합완료나 구조조정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산업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된다. 이때 원산지판정기준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EC는 단일 시장의 이익을 최대한 EC기업에 부여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 반덤핑 관세규정과 local content 의무규정을 적절히 결합하여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모든 법규가 다 그렇듯이 원산지 규정도 특정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한 수단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원산지 판정기준 역시 일국의 산업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기준이 지니는 보호주의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역내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보호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역내 여타산업이나 역내 후생에 대해 오히려 불이익을 강요하는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수량규제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산업정책과 결합할 때는 강력한 수입규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수량규제는 그 효과가 상대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의 결과 이러한 산업정책의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NAFTA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항은 역내국 제품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역내국의 산업피해시 발효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이때 원산지 규정은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식별을 통하여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쿼타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가되는데 이때 조건이 엄격하게 설치되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 Ⅲ. NAFTA의 원산지규정을 통한 미국의 통상정책

#### 1. 미국의 통상정책 변천과 NAFTA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제창자였다. 미국이 제창한 ITO는 미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산됐지만, 그에 앞서 행해져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교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잠정적으로 ITO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미국은 GATT의 서명국이며 자유무역의 주도국으로서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관세의 인하 및 수입장벽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적어도 60년대까지는 농산물이나 섬유제품 등 일부 제품들에 대한 수입은 예외로 제한했지만, 무역상대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국시장을 개방하였다. 이는 세계경제 대공황을 악화시킨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는 스무트-홀리관세법(Smoot-Hawley Act; 일방적인 관세의 대폭적 인상)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경제의 질서는 무역경쟁의 심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남북문제의 첨예화 그리고 미국경제의 상대적 우위성 상실 등으로 다시 보호무역주의

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GATT체제하의 자유·무차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주의가 점차 퇴색되면서 미국의 정책도 차츰 일관성을 결하게 되었다. 일련의 GATT 라운드교섭이나, 여타의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이라고 하는 표어하에, 제한적인 무역수단에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행하는 경우 무역에 대해 간섭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자간 무역에 대한 명확한 지지에서 이원적(two track)접근으로 정책적 전환을 이행하였다.

이것은 GATT의 다자간주의에 대한 지지와 동시에 쌍무간 통상협정을 병행하는 다원적 접근(Multi-track Approach)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정책수단의 우선도 역시 '가능하면 다자간으로, 필요하면 쌍무간으로 무역장벽 제거를 지향한다' 이다. 다자간 교섭에서 미국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쌍무간 교섭으로 해결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자세의 변화는 공식적으로는 1985년 9월에 발표한 「신통상정책」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原 邦英, 1998. pp.103-121).

여기에서 미국은 첫째 다자간 교섭을 통한 무역의 자유화, 둘째 지역간 교섭을 통한 무역의 자유화, 셋째 일방적 조치에 기초를 둔 무역의 자유화라고 하는 3가지의 접근방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원적 접근방식(Multi-track Approach)을 새로운 통상전략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美통상정책 변천의 배경은 국제정치정세나 미국경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제정치정세의 변화는 즉 냉전의 시작에서 종결을 의미한다. 전후 미국은 마샬계획에 의해 유럽경제부흥을 도왔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점령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주된 목적은 소련으로부터 서방진영의 강화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었으며, 미국의 수출시장 확보라고 하는 통상정책적 목적은 이차적인 것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저하함에 따라, 미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산업에서 수입규제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미 통상법의 활용에 의해 보호조항,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을 적용하거나, 혹은 수출국에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것 등으로 수입을 제한했다. 그리고 수출이 미국경제의 발전에 불가결하다고 인식되면서 무역상대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구조의 붕괴와 서방진영의 강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통상문제가 대외교섭의 중요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확대해진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불공정무역관행의 시정을 위해 일방적 쌍무적, 다자간 무역조치 등 다양한 방법에 의존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통상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무역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FTA(Free Trade Area)와 같은 지역주의 정책이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미국의 통상정책은 GATT/WTO에 의한 一元的인 무역자유화를 유일한 규범으로 간주하지 않고, 지역간 FTA, 수퍼 301조라고 하는 일방적 조치 등을 더한 중층적인 무역자유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GATT/WTO를 선택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전략을 계속 취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 있어서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변질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지역주의적 통상정책은 NAFTA에 의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 및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2년 발표한 지역경제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역내 제국간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상호간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이지만 NAFTA는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완화 뿐만 아니라 투자·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과 지식소유권 보호 및 환경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에만 그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는 B.Balassa의 전통적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상당히 폭넓은 협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NAFTA는 인구 3억 7천만명을 갖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 세계교역질서에 지역별 Bloc화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FTA(Free Trade Area)와 원산지규정

FTA는 어떠한 형태로든 역내국과 역외국의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원산지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FTA내의 역내국간에는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역내국 제품이 인위적인 경쟁력 우위를 가지게 되고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FTA내의 역내국간에 무역확대를 통

한 무역창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무역굴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무역굴절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은 자유무역지대 회원국 원산제품과 역외국 원산제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이 더욱 엄격하고 무역굴절을 더욱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후생을 증가시키는 무역창출에 근거한 역외무역의 확대는 줄어든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무역굴절을 막는데 완벽하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원산지규정이 더욱 규제적일수록 그 결과 보호효과가 더욱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제적인 부가가치기준 및 현지부품사용의무규정이 존재한다면 FTA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부관세와 비관세장벽을 가지고 있을 때 후생을 감소시키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현지부품사용의무규정은 한 회원국에서 높은 외부관세와 결부시켰을 때 역외 저비용 생산업자로부터 역내 고비용 공급업자로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FTA를 통한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무역굴절방지와는 강력한 원산지규정에 의해 야기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없으나 다만 원산지규정이 더욱 규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무역굴절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지의 여부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 및 현지부품사용의무규정이 더욱 엄격할수록 무역창출에 근거한 역내 무역확대의 잠재성을 감소시키는 순효과와 더불어 무역전환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FTA 당사국들이 강력한 원산지규정의 요구에 부응할 경우 FTA는 보호주의 수단으로 결말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나 GATT는 제 24조에서 지역통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역외국에 대한 관세, 그밖의 장벽은 협정체결 이전의 수준보다도 높게 되어서는 안된다.」(제5항b)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AFTA는 GATT 제24조와의 정합성에 관련해서 원산지규정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 GATT 제24조의 [그 밖의 장벽]에 포함될지에 관해서는 GATT/WTO내에서 아직도 매듭지어 있지 않지만,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운용은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으며 무역 및 투자자의 흐름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NAFTA의 원산지 인정요건이 美·加 FTA보다도 더 엄격해졌다는 점이며 이는 미국의 FTA정책의 본질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 NAFTA의 원산지규정과 미국의 보호주의

NAFTA협상은 90년 6월 10일 개시된 이후 2년만인 92년 8월 12일로 공식 타결되었고 93년까지는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협정으로서 NAFTA설립의 목적은 체약국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함에 있기 때문에 동협정 시장 접근분야의 6개 실무협상중 하나로 진행된 원산지규정은 역외국의 무입송차를 방지하고자 미-캐나다의 FTA수준보다 일면 강화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그 분량도 170여면에 달하고 있다.

NAFTA 원산지규정은 미국의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분류해 볼 때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임에 비해 NAFTA 원산지규정은 대부분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 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품에 따라서는 현지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충족조건, 현지산 특정부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동 규정의 세번분류는 HS분류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NAFTA의 세번변경기준은 부칙(Annex 401.1)에 규정되어 있는데 역내 국산품의 기준이 정의된 제401조의 원칙에 우선하여 세번변경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동 401조는 역내국 제품으로서 제조과정에서 역외산 물품이 부가될 경우 부가된 역외산 물품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되어 부칙(Annex 401.1)에 규정되어 있는 세번변경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를 북미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정부품 사용 의무기준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특정 원자재나 부품사용을 북미산으로 할 경우 원산지를 북미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동기준에 의한 개별 품목별 세부원산지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마찬가지로 부칙(Annex 401.1) 상의 특별 원산지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동 규정 제402조는 수입반제품과 그 수입 반제품으로 가공된 완제품이 세번 상 다른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에는 RVC를 충족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통상 '순비용'의 50% 또는 거래가격의 60%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NAFTA 원산지규정은 기본원칙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역내산 업보호에 필요한 자동차 및 동 부품, 전자, 섬유들은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이 첨부되어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NAFTA 원산지규정의 적용상의 특징은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나타냈으며 특히 원산지판정시

부가가치기준의 모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반영하였다.

NAFTA에서는 이른바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번변경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지정해 두고 있다. 품목에 따라서 세번변경의 범위를 따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부가가치 기준을 보조적으로 부가한다든지 아예 제품의 제조공정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이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특징은 NAFTA 원산지규정이 각 제품이 갖는 무역 및 산업정책적 성격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NAFTA의 원산지요건은 '原絲要件(yarn-forward)'이다. 특히면, 합섬사 또는 바늘질용 실 등으로 만든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섬유원료요건(fiber-forward)'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북미산 原絲를 이용해서 생산된 직물을 사용하여 역내공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NAFTA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섬유원료요건이란 북미산이며 역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原絲에 사용된 섬유원료가 북미산이며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북미산 의류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미산 직물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북미에서 裁斷,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캐나다 FTA에서는 布가 미국·캐나다산이면 북미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던 것에 비해 NAFTA에서는 絲의 단계에서부터 북미산인 것만 북미산인 것으로 원산지 인정요건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AFTA의 섬유 및 의류관련 원산지규정은 NAFTA 역외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북미 섬유기업들이 경쟁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섬유분야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로서 자동차에 관한 NAFTA의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구성의 두가지 병행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원산지판정에는 역내 부가가치구성을 계산시 정확도를 제고하여 장비의 본래 목적에 사용된 자동차 또는 부품의 역내부가가치 산출시 동 주요부품과 조립품의 역외부가가치 구성율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역내 조달율의 산정방식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이처럼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결국 미국산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지부품조달비율이

美·캐나다간의 FTA에서는 50%였던 것이 NAFTA에서는 당초의 50%에서 2002년에 62.5%로 강화된 것이다. 또한 칼라TV의 경우는 美·캐나다간의 FTA에서는 50%의 현지부품 조달비율을 충족시키면 북미산으로 인정되었지만, NAFTA에서는 브라운관이 북미산이 아니면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Local Content의 요구는,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역외국의 무역이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NAFTA의 원산지규정은 미-캐나다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섬유, 자동차, 칼라TV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는 과거 보다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기준과 같은 분쟁의 요소를 제거한 반면 HS를 기초로 하여 부속서에 예외규정을 두어 세번변경의 명료성을 위장하여 NAFTA 체결국간의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역외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결국 NAFTA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역내생산 및 고용확대를 위해 자동차, 컬러 TV, 섬유 및 의류 등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협정은 대단히 엄격하고 배타적이며 역외국에 대한 장벽을 높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외국에 대한 관세, 그밖의 장벽은 협정체결 이전의 수준보다도 높게 되어서는 안된다.」 GATT 제 24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NAFTA의 경제 블록화를 우려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IV. 결 론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경제질서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블록화의 심화와 생산의 범세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같은 변화는 자연히 원산지판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며, 또한 각국별, 지역별로는 통상정책 목적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게 제정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GATT나 WTO의 기본이념과 목적인 전통적

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는 대신에 원산지규정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AFTA의 출범으로 인한 지역주의 확산 및 역외차별적 성격 강화에 따라 원산지 규정은 지역주의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행히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이러한 배타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최근의 무역 및 생산활동의 글로벌화는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쟁점의 확대와 심화를 가져와 원산지의 규정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볼 때 NAFTA의 원산지규정은 미-캐나다 FTA의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나 섬유와 자동차 원산지지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보다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NAFTA 원산지규정은 「역외국에 대한 관세, 그밖의 장벽은 협정체결 이전의 수준보다도 높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GATT 제24조에 반하고 있으며, 또한 NAFTA의 원산지 규정의 성격은 역외국들이 전세계 각국의 상이한 비교우위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범세계화 전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NAFTA의 원산지규정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NAFTA 원산지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보호주의적 차별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원산지 관련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차질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인수 외 7인공저,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p 139-140
- 김기홍, “지역주의 효과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1997. 2.
- 김세원,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경제”, 경제논집 제 35권 제2·3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년 9.
- 김종현, “NAFTA의 원산지규정”, 경영연구 제20집,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1995
- 김창태, “FTA의 통상정책적 도구로서의 원산지규정”, 국제무역연구 제4권 제1호 1998, 10 p.51
- 한국무역협회, 원산지 이론과 실무 1998. p5
- 한홍렬,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5-08, 1995.10
- \_\_\_\_\_,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02, 1994.
- 原 邦英, “WTOと米國通商政策”, 貿易と關稅, 1998. 4
- 渡部福太浪, “アメリカの 國際經濟政策”, 世界經濟評論, 1998년 6月
- Edwin vermust and Raul Wear, EC Rules of Origin as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24/June, 1990. p.57p
-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 John P. Simpson,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rules of Origin, Journal of world Trade, Vol.28, No 1. 1994
- Robert Z. Lawrence, Region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ton, D.C 1996.

- ・ Simpson, John P.,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Rules of Origin", Journal of World Trade Vol.29, No.2, Feb.1994
- ・ Jeffrey J. Schott and Gary C. Hufbauer, "Implications of NAFTA for US trade policy in the Pacific Basin", Asia Pacific Regionalism, The Australia -Japan Research Centr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4
- ・ Richard Gibb and Wieslaw Michalak, CONTINENTAL TRADING BLOCS, JOHN WILEY & SONS, 1994